

[제정 2020.06.10.]  
[개정 2020.09.09.]  
[개정 2020.10.07.]  
[개정 2020.11.11.]  
[개정 2020.12.09.]  
[개정 2020.03.10.]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재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우수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유도함으로써 창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미래 청년 벤처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제3조 (대상 및 신청방법)

- 가. 창업동아리는 동명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단 사업단장의 승인 하에 기 창업한 학생도 선발 대상이 된다.(개정 2020.10.07.)
- 가-1.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과 재학중인 학부생 2~5명으로 구성한다. 단, 1인창업자의 경우 지도교수 1명과 학생 1명으로 가능하다.(제4조 나항에서 제3조 가-1항으로 이동 2020.09.09)
- 나. 신청 방법은 창업동아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SW산학융합센터로 방문 신청한다.
- 다. 학생 1인당 창업동아리 1개 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이중가입을 제한하며 창업동아리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 라. 창업동아리는 신청접수는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선발)

- 가. 창업동아리 선정은 창업동아리 참가신청서를 평가한 후 SW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개정 2020.09.09)
- 가-1. 창업동아리 평가위원은 사업단장이 정하며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09.09.)
- 가-2. 평가위원 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창업동아리만 SW사업운영위원회에 추천한다.(신설 2020.09.09.)
- 나. 창업동아리는 지도교수 1명과 재학중인 학부생 2~5명으로 구성한다. 단, 1인창업자의 경우 지도교수 1명과 학생 1명으로 가능하다.(제4조 나항에서 제3조 가-1항으로 이동 2020.09.09.)
- 다. 창업동아리 선발은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둘째 주 SW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해당 주 금요일에 발표한다.
- 라. 교내외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SW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마. 휴학생의 경우 사업비 지원은 불가하지만 창업동아리에 소속은 가능하다.

#### 제5조 (지원내용)

- 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은 기자재구입비, 출장비, 인쇄유인물비, 전문가활용비,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재료비, 시제품제작비,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에 한정하여 지도교수의 서명을 득한 후 지원한다.(개정 2020.11.11.), (개정 2020.12.09.)
- 1) 시제품 제작 시 시제품에 대한 시제품제작계획서, 시방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등 필요 구비서류를 시제품 제작 전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 2) 창업팀의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만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다.
  - 3) 시제품제작비는 사업단장 승인 시에만 지원된다.
  - 4) 재료비와 홍보제작비는 각각 지원금 전체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단, 10%를 넘기는 경우 SW산학융합센터장의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 5) 자문료는 분기별 1회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회당 최대 300,000원(금삼십만원정)까지 지급 가능하다. 동아리 운영기간 동안 최대 600,000원(금육십만원정)을 넘을 수 없다.(개정 2020.11.11.)
  - 6) 기자재구입비는 학교 물품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20.11.11.)
  - 7) 소프트웨어개발자등록비 및 통신판매업등록면허세는 간접비에서 지원 가능하다.(신설 2020.12.09.)
- 나. 창업동아리별 최대 지원 금액은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정)까지 지원 가능하다.
- 다. 시제품 제작은 최대 지원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3회까지 신청 가능하다.
- 라. 시제품제작비가 창업동아리 지원총금액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정) 이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장의 승인 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제6조 (창업의 인정범위)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생창업에서 제외한다.
-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제7조 (업종)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학생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 금융 및 보험업
  - 2) 부동산업
  - 3) 숙박 및 음식점업
  - 4) 무도장운영업
  -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 6)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 7) 그 외 학생창업지원위원회에서 학생창업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나. 제1항의 제외업종인 경우에도 SW사업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학생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8조 (활동 및 결과보고)

- 가. 본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및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지도교수 및 참여 인원, 팀명, 창업 아이템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창업동아리 변경신청서를 SW

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SW산학융합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창업동아리 활동보고는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첫째 주 금요일에 창업동아리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사업단에 제출한다.
- 2) 각종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시 참가지원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해당 프로그램 종료 시 참가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 3) 창업동아리 활동을 중단하는 학생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4) 창업동아리 종료 시 창업동아리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9조 (장학금 및 마일리지)**

가.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수상금은 해당 창업 동아리에 귀속한다.

나. 창업동아리 참여시 구성원 1인당 매 분기별로 활동보고서 제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에게 사업단 마일리지 5점을 지급한다.(개정 2021.03.10.)

**제10조 (물품구매 및 활동비 지원)**

가. 창업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물품구매 및 지원 가능한 항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모든 구매행위 이전에 재료구입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드시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하다.

다. 물품구매 전 반드시 SW산학융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집행하지 않으며, 기집행된 것은 환수 조치한다.

1) 지원금 비목 및 해설(개정 2020.11.11.), (개정 2020.12.09.)

세부비목	내 용
기자재구입비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구입에 한함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도장필 인터넷구매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략 물품 구입시 비교견적서 포함
출장비	세미나, 전시회, 각종 경진대회 등 참가지원 -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검토 후 교통비 지급 - 교육 및 각종 경진대회 참가팀에 한하여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원함
인쇄 유인물비	홍보제잡비 원칙상 지원금에서 10%까지 지원 - 아이템 홍보용 판넬 및 브로셔 제작

전문기활용비	<p>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각 300,000원(금삼십만원정) 지원</li> <li>- 동아리 운영기간 동안 최대 600,000원(금육십만원정)을 지원함</li> </ul>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p>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비 지원</p> <p>소프트웨어 등록비 지원</p>
재료비	<p>재료비는 원칙상 지원금에서 10%까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만원 이상 시 중앙 구매</li> <li>- 100만원 미만시 직접 구매</li> </ul> <p>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에 한함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도장필 인터넷구매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생략 물품 구입시 비교견적서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성 재료 및 컴퓨터 관련 제품 구매 불가</li> </ul>
시제품제작	<p>학생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의 외주가공 위탁</p>
소프트웨어 개발자등록비	<p>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한정하여 간접비로 개발자 등록비 지원</p>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p>온라인 판로 확보를 위해 간접비로 통신판매업등록비 지원</p>
<p>※ 사무용품 등은 구매 불가.</p> <p>※ 모든 구매행위 이전에 재료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전에 반드시 검토 받아야 하며, 사업단의 검토가 없이 이루어진 구매행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p> <p>※ 관련증빙서류는 내규에 따라 제출한다.</p>	

2) 인터넷 상품 구매

<p>물품 구매 알림 사업단 ↓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구입 신청서 제출(배송료/부가세 등이 포함된 최종 금액)</li> <li>■ 물품 정보 제출(구매 물품 사이트에서 출력, 가격비교사이트의 비교금액 제출)</li> </ul>
<p>물품품의서 확인 및 물품구매 (사업단) 물품 ↓ 배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구매 여부 검토</li> <li>■ 품의서 결재(결재 완료 후 구매 가능시 구매 요청자에게 알림, 재료 구입 신청서에 구매자 연락처 명시 요망)</li> <li>■ 물품 인터넷 구매 및 카드 결재</li> <li>■ 카드 전표 제출</li> </ul>
<p>증빙자료 제출 ↓ 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수령</li> <li>■ 동아리에서 검수조서 및 사진 제출</li> </ul>
<p>지출결의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확인</li> <li>■ 물품검수조서</li> <li>■ 카드정산처리</li> </ul>

3) 직접 구매

<p>물품 구매 알림 사업단 ↓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료 구입 신청서 제출</li> <li>■ 물품 견적서 1부(5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1부 추가 필수)</li> </ul>
<p>물품품의서 확인 (사업단) 집행가능 ↓ 통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 구매 여부 검토</li> <li>■ 품의서 결재(결재완료 후 구매 가능 알림, 품의서에 구매자 연락처 명시 요망)</li> </ul>
<p>물품구매 및 증빙자료 제출 ↓ 검수</p>	<p><b>-세금계산서 발행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계산서('청구함'으로 표시)</li> <li>■ 거래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li> <li>■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추가 필수)</li> <li>■ 구입물품의 상세내역이 적힌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li> <li>■ 요청물품 사진 제출 필수</li> </ul> <p><b>-법인카드 결재의 경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추가 필수)</li> <li>■ 구입물품의 상세내역이 적힌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서</li> <li>■ 법인카드 영수증</li> <li>■ 요청물품 사진 제출 필수</li> </ul>
<p>지출결의 (사업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빙서류 확인</li> <li>■ 물품검수조서 작성</li> <li>■ 업체 통장으로 송금</li> </ul>

4) 교통비(출장비)

경진대회 지원신청 사업단 ↓ 제출	■ 경진대회 지원신청서 제출(경진대회 2주 전 제출)
지원여부 검토 집행가능 ↓ 통보	■ 지원여부 및 규모를 사업단에서 검토
경진대회참여 ↓ 검수	■ 경진대회 참여 후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경진대회 증빙서류(사진, 교통비 영수증 등) ■ 경진대회 지원비는 각 개인통장으로 지급

마. 교통비(출장비)의 경우 아래의 내용으로 집행한다.

- 1) 여비지원은 창업 관련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 2) 여비지급 시 운임비는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3)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톨게이트비, 일비, 식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 4) 지원여비에 대한 증빙은 교통비 영수증 및 관련서류, 행사사진을 SW산학융합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 5) 교육 및 경진대회 참가 시, 반드시 사전에 SW산학융합센터에 확인을 받도록 하며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 6) 지원금 및 참가인원에 대해서는 대회규모, 지역 등에 따라 SW산학융합센터에서 결정한다.
- 7) 여비지원 금액은 아래의 본교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 (등록의 취소)

가. 등록된 창업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SW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본 대학의 설립정신에 위배되거나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2) 지도교수의 사임 후 1개월 내로 후임 지도교수를 추대하지 못하였을 경우
- 3) 전년도 활동사항이 극히 저조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학생창업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5) 고의적으로 창업시제품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6) 창업동아리로 선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외 창업관련 경진대회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소프트웨어 등록과 같은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7) 제8조 '다'에 '1항' 활동보고서를 2회 연속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8) 기타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2조 (사후관리)

참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의 노하우를 제공하고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 제13조 (기타사항)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SW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은 2020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은 2020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은 2020년 1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의 개정은 2021년 0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첨 부

1. 창업동아리 참가 신청서
2. 창업동아리 변경 신청서
3. 창업동아리 재료 구입 신청서
4. 시작품/시제품 제작 신청서
5. 참가지원 신청서
6. 학생 출장신청서
7. 학생 출장 복명서
8.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9. 자문료 청구서
10. 자문 보고서
11. 탈퇴 신청서
12. 창업동아리 분기별 보고서
13. 창업동아리 최종 결과 보고서